

협력사 가입신청서

일반회원용

스마트폰 용 화물배차프로그램 설치 요청 (□에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요청 <input type="checkbox"/>	설치 거부 <input type="checkbox"/>
화물배차프로그램(어플) 설치 스마트폰	제조사	모델명

사업장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배차담당핸드폰
사업장주소	
자택주소	이메일주소

1. 본 가입신청서 작성과 함께 (주)화물맨이 정한 회원이용약관에 대해 동의하며 수용하기로 합니다.
 2. 회원 가입과 관련하여 제공한 일련의 정보는 (주)화물맨의 마케팅 자료로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3. 화물의 등록, 배차, 운송과 관련하여 차주와 발생하는 분쟁 등 일체의 분쟁에 관해서는 (주)화물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확인하고, (주)화물맨의 회원이용약관에 따라 처리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화물맨의 회원이용약관을 숙지하였고 그에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5. 화물 등록 시 과적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적재중량을 입력하며 과적정보 등록 차단에 동의합니다.
 6. 화물 관제에 따른 위치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7. 협력사에 대한 아이디 부여와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가 (주)화물맨에게 있음에 동의합니다.
 8. 협력사의 의사표시에 의한 일시정지 후 3개월이 경과되면 자동 탈퇴됨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_____ (인)

일반회원 정책

- (주)화물맨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무료로 화물등록 가능
- 화물실적신고용 엑셀파일 자료제공 서비스
- 주선수수료 자동 정산 서비스 제공 (이 서비스는 주선 면허가 있는 모든 협력사에 제공)

가입서류 : 1. 가입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주선면허증 4. 통장사본
 5. 예금주 신분증 (고유식별정보 확인 및 세금계산서 등 발행을 위함)

주식회사 화물맨
 경기도 광주시 장지1길 90 / 전화 : 1800-1234 / 팩스 : 031-762-9377



수수료 입금용 계좌 등록 신청서 [일반회원]

신청인 정보

상 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생년월일	
휴 대 폰		팩스번호	
사업장주소		이 메 일	

입금용 계좌 등록 신청 내용 (신청고객 기재란)

예금주명	(인)	예금주 생년월일 (사업자는 등록번호)	
금융기관명		입금계좌번호	
예금주 연락처		예금주와관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입금계좌를 통한 수수료 지급.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입금이체 종료일(해지일) 후 5년까지.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입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제공의 법적 근거가 있는 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수수료 입금 서비스 제공 및 입금동의 확인, 이체, 신규 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수료 입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인은 개인정보에 대해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입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입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고객의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세지, 유선 등으로 고객의 입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워서 보내주세요)
- 주선면허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 사본

※ 통장명이가 다른 경우 (1. 통장명이자 인감증명서 2. 주선/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인감증명서)

위 계좌를 수수료 입금용 계좌로 신청합니다.

계좌 명의인과 주선면허증/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가 상이하여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결과는 아래의 서명날인한 사람에게 있음을 확인하며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통장명의인) : _____ 서명 또는 인감날인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때) 주선/사업자등록증 대표자 : _____ 서명 또는 인감날인

전화 : 1800-1234 / 팩스 : 031-762-9377, 031-798-2416

주식회사 화물맨 대표이사 임영묵





선 · 착불 건 주선수수료 자동정산 처리 규정 동의서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주)화물맨(이하 "회사"라고 합니다)의 화물정보망을 통하여 화물을 배차 받아 운송한 차주가 운송비를 선불 또는 착불(이하 "선 · 착불"이라고 합니다)로 지급 받는 것에 대하여 화물을 등록한 주선사업자(이하 "주선사"라고 합니다)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선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 합니다)를 회사의 화물정보망시스템에 의해 자동 정산하는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선불 또는 착불 표시된 화물정보에 한하며,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모든 화물차 차주 및 주선수수료 수령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주선사업자가 적용대상입니다.

제3조 【정산방법】 수수료 자동 정산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 ① 차주는 본인의 가상계좌에 일정액 상당의 금액을 예치금으로 입금합니다.
- ② 주선사는 선 · 착불 표시와 함께 수수료를 명시한 화물정보를 회사의 정보망에 등록시킵니다.
- ③ 차주는 수수료가 표시된 선 · 착불 건 화물의 운송을 희망할 경우 배차요청을 하게 되며, 이때 예치금이 수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차 받을 수 없습니다.
- ④ 예치금 차감을 통해 화물을 배차 받아 운송을 완료한 차주는 7일의 기간 내에 운송비 수령 여부를 본인의 화물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체크)해 줍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운송비 지급이 이루어졌을 경우, 배차 완료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 24시 이전에 주선사에게로 수수료가 자동 송금됩니다.
- ⑤ 만약, 배차 완료일로부터 7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차주가 운송비 수령 여부를 화물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체크)해 주지 않으면, 차주의 화물맨 어플리케이션에 팝업창으로 운송비 수령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촉구하면서 7일의 기간을 한번 더 부여해 줍니다.
- ⑥ 위 제5항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추가 7일의 기간 내에 운송비 수령 여부를 확인(체크)해 주지 않을 경우, 운송비를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고 배차 완료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 24시 이전에 수수료가 자동 정산되어 주선사의 가상계좌로 송금됩니다.
- ⑦ 위 제6항의 경우, 이후에 차주가 운송비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주선사가 차주에게 반환해야 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주선사와 차주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로 처리해야 하며, 이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 ⑧ 주선사는 본인의 가상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뱅킹 프로그램을 통해 실계좌로 이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4조 【화물정보 등록】

- ① 주선사는 최대 14일 내에 운송비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화물을 대상으로 선불 또는 착불을 표시해 화물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 ② 주선사는 선 · 착불 건 화물이라 하더라도 수수료 자동정산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수료 항목을 입력하지 않으면 수수료는 자동 정산되지 아니합니다.

제5조 【예치금】

- ① 차주는 선 · 착불 건 화물을 배차받기 위해 회사에서 부여한 본인의 가상계좌에 수수료를 상회하는 정도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차주 본인이 예치금 잔액과 입 · 출금 등의 세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③ 차주 및 주선사는 언제든지 가상계좌의 예치금 잔액에 대해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배차신청 및 예치금 차감】

- ① 화물정보 창에 표시된 수수료보다 차주의 예치금이 적거나 예치금이 없을 경우, 차주는 배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② 차주의 배차신청이 수락되어 배차가 완료되면 동시에 차주의 가상계좌에서 예치금이 수수료 금액만큼 자동 차감됩니다.
- ③ 회사는 차주의 예치금 잔액이 부족하여 배차신청이 거절 될 경우 해당 내용을 문자를 통해 차주에게 전달하여 줍니다.
- ④ 배차가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수수료가 차감이 된 후 당일에 한하여 배차가 취소되면 수수료는 자동으로 차주에게 반환됩니다.

제7조 【운송비 결제와 수수료 지급】

- ① 차주는 반드시 운송이 완료되고 정상적으로 운송비를 받은 경우에는 화물맨 어플리케이션의 "운송비 받음"항목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운송비 못 받음"항목에 확인(체크)하여 운송비 수령여부를 고지하여야 하며, 한 곳도 확인(체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차 완료일로부터 14일 째 되는 날 24시 이전에 자동으로 주선사에게 수수료가 입금 처리됩니다.
- ② 주선사는 미지급 운송비에 대해 최대 14일의 기간 내에 지급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14일이 지나도록 미지급된 건의 수수료는 14일째 되는 날 24시 이전에 차주의 가상계좌로 자동 반환됩니다.
- ③ 만약, 배차 완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지급된 운송비, 수수료 및 "운송비 받음"항목 확인(체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는 주선사와 차주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로 처리해야 하며, 이에 대해 회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 ④ 회사는 화물정보망시스템을 통해 주선사가 수령한 수수료에 대해 일자 별로 주선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8조 【수수료 수령계좌 등록】

- ① 주선사는 회사의 소정양식에 따라 선 · 착불 건 주선수수료를 수령할 계좌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② 주선사의 수수료 수령 계좌가 등록되지 아니하면 선 · 착불 건 자동정산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③ 수수료 수령계좌가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계좌정보가 변경되었는데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여 예전의 계좌로 송금된 경우 등 정상적인 자동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일체의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제9조 【이자 및 송금수수료】

- ① 회사는 선 · 착불 건 수수료 자동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송금수수료를 제외한 별도 비용에 대해 차주와 주선사에게 청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 ② 회사는 차주 및 주선사에 대하여 예치한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차주 및 주선사에 대하여 예치금에서 차감한 수수료가 주선사에게 지급되기 전까지의 기간동안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가상계좌에 대한 예치금 입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송금수수료 250원 및 출금 시 발생하는 송금수수료 150원은 이체 당사자인 차주 및 주선사가 부담합니다.
- ⑤ 가상계좌의 송금수수료는 금융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송금수수료와는 별도로이며, 회사와 대행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⑥ 가상계좌는 타 금융기관의 협조가 있기 전까지는 당분간 신한은행 계좌로 부여합니다.

제10조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 ① 본 규정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수수료 금액만을 자동정산 처리합니다.
- ② 주선사는 차주로부터 송금 받은 수수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③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주선사와 차주 간의 문제로서 회사는 여기에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 ④ 차주는 선 · 착불 건 화물에 대한 운송절차가 정상적으로 완료됨으로서, 회사가 차주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주선사에 제공하여 차주가 일일이 사업자등록증을 주선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로 한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인은 위 선·착불 건 주선수수료 자동정산 처리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였는바, 이에 동의하고, 선·착불 건 주선수수료 자동정산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주)화물맨에게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